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04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2. 11. 4.자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와 D는 2015. 5. 4. 혼인하였다가 2023. 12. 5. 협의이혼하였다.

○ D는 2017. 12. 15. E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7.부터 2019.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 D는 2020. 2. 11. E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11.부터 2022. 2. 1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D는 2022. 11. 4.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차임 지급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됨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피고는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1. 4.부터 2024.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A는 2023. 3. 29. D와 '원고 A가 2023. 3. 30. D에게 3,88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3. 4. 30.부터 2025. 3. 31.까지 매월 120만 원씩, 2025. 4.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18%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23년 제172호)를 작성하였다.

○ 원고 B은 2023. 3. 30. D와 '원고 B이 2023. 3. 30. D에게 6,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3. 4. 30.부터 2025. 3. 30.까지 매월 238만 원씩, 2025. 4. 30.까지 880만 원을 지급하며,

자연손해금은 연 18%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23년 제171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22. 11. 4.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 역시 2023. 3. 30.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소장을 통해 2020. 4.경 각 1억 원씩을 대여한 후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4. 5. 28.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2020. 6.경부터 2021. 12.경까지의 수차례 이루어진 금전 대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또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원고 A는 7,900만 원을, 원고 B은 108,2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송금내역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한데다가(피고는 위 송금금액이 원고들과 D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변제금액 역시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정증서상 대여금이 원고들 주장의 대여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D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시기가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위 채권이 D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D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별지